

자료문의: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 박인규(509-7246),주무관 황인택(509-7246)

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

- 기술표준원, 12월말까지 자율안전확인 표시 계도기간 부여 -

□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컴퓨터,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리튬2차전지를 오는 7월1일부터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

○이에 따라 리튬2차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자율안전확인시험. 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

자율안전확인시험. 검사기관:한국화학시험연구원,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전기연구원

○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에는안전마크,자율안전신고번호,제품의 모델명 등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

□아울러 리튬2차전지 제품에의 표시사항 변경 등 준비기간 및 국. 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설명함

* 기술표준원홈페이지(www.katz.go.kr) 및제품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 참조

○그 대신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와 수시로 안전점검 간담회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자율안전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발화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

□기술표준원은 리튬2차전지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함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그 동안 국. 내외 관련 제조업체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안전기준 준수 방안을 협의해 왔음

○리튬2차전지의 안전기준은 국제수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

* ①고온방치시험의 경우 90℃(국제기준 : 70℃)에서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②고온단락시험의 경우 단자를 고온에서 단락시켰을 경우 표면온도가 150℃ 미만(국제기준 :제한 없음)이고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③열노출 및 압착시험의 경우 45℃(국제기준 : 20℃) 충전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등

○군사용, 연구장비용 등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특수용도의 리튬2차전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

○리튬2차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별도의 추가시험 없이 해외의 전지제조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.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(부본)를 활용할 수 있음

□기술표준원은 리튬2차전지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하여 관리함을 계기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휴대기기를 사용. 취급하는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함

○현재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통상적인 표시사항 외에 안전마크, 제조자명, 수입자명(수입품의 경우), 제조연월, 제품보증기간(권장사항) 등이 추가로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됨